

인터넷 청약 안내

□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청약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1. 청약통장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 구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
| 전용 85㎡ 이하 | 300만원 이상 | 25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2. 인증서 발급

청약 전 반드시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 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 | | |
|---|--|----|---|
| 1 | 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6 | 청약 신청 유의사항 확인 |
| 2 | 청약신청메뉴 > APT > 특별공급 또는 1순위, 2순위선택 | 7 |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 3 | 청약 신청 클릭 | 8 | 청약 자격 확인 및 입력 |
| 4 | 인증서 로그인 | 9 | 청약 신청 내역 확인(연락처, 주소 등 입력) * 청약신청 미완료상태 |
| 5 | 주택 선택(마포 에피트 어바닉) | 10 | 청약 신청 완료 |

※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청약관련 서비스 안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된 청약(예정)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청약제한사실 등 청약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청약 신청내역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청약 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 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서비스 이용은 선택 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기관 (정보 보유기관) 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 자격 (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 자격 검증

| 서비스 구분 | 이용시간 | 이용일자 |
|-----------------|---------------|--------------------|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취소 | 09:00 ~ 17:30 | 모집공고일 익일~ 청약신청일 전일 |
| 공고단지 청약연습 내역조회 | 09:00 ~ 21:30 | 신청일로부터 3개월 |
|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 09:00 ~ 17:30 | 영업일 |

일반공급 안내문

■ 일반공급 자격조건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1순위 요건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 요건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85㎡ 이하 | 40% | 60% |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입주자모집공고 참조)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당첨자 선정방법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단계 | 비율 | 내용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공통사항]

■ 특별공급 유형별 간단자격 안내

| 구분 | 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
| 청약가능면적 | 전용 85㎡이하 | | 모든 면적 | | 전용 85㎡이하 |
| 청약자격 |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 (태아, 입양자녀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적 없으며, 현재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세대주 여부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세대주 | 미적용 |
| 청약통장가입요건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공공자, 장애인 제외) | |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1순위자 | |
| 거주요건 | 해당 기관장 추천 | 해당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기타지역: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 | |
| 주택소유여부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 | | | | |

■ 특별공급 유형별 간단자격 안내

| 구분 | 내용 | | | | | | | | | |
|---------------|--|---|------|---------------|--|---------------|---------------|---|---------------------|-----------|
| 공급 기준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 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p> | 구분 | 처리방법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구분 | 처리방법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 | | | |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
| 무주택 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p> | | | | | | | | | |

■ 청약금의 예치금액

| 구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본 안내문은 청약 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 또는 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
| 신청 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
| 추천 기관 | 구분 | 관련 법규 | 해당 기관 |
| |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불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 장애인[청약통장 불필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 청약통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 청약 업무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본 안내문은 청약 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 또는 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안내문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청약통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 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

| 배점항목 | 총 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3명 | 35 | |
| | | 2명 | 25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계 | 100 | (1), (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 |

*본 안내문은 청약 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 또는 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순위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 <p>※자녀기준 및 소득,자산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인시기 바랍니다.</p>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순위 | 내용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안내문은 청약 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 또는 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청약통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2년 미만 | 4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 1명 | 10 | 5명 | 30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①+②+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본 안내문은 청약 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 또는 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문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마포 에피트 어바닉 전타입 신청가능)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p> <p>※ 소득, 자산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인시기 바랍니다.</p>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본 안내문은 청약 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 또는 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